##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16

발의연월일: 2020. 7. 8.

발 의 자: 장철민·김진표·임오경

박영순 • 윤미향 • 최종윤

안호영 · 홍영표 · 맹성규

양이원영 · 송옥주 · 김민철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요양급여 제 외항목(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재해근로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의 급여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착오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본인부담 비용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음.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있고 더 많이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본인부담 비용이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다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의 과다 징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lt;신 설&gt;</u>	재 정 안 제41조의2(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제40조제1항에 따 른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 범 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 부에 대하여 공단에 확인을 요 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 여 대상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 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받아 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
	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

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 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지급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 부담금을 공제하여 확인을 요 청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